

결 산 감 사 의 견 서

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귀하

학교법인 감사들은 「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23조 (결산)와 학교법인 상산학원 정관 제9조 및 동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상산학원의 2019회계 결산에 대하여 2020년 3월 27일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내용과 같이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음.

■ **금번 결산감사**는 2019회계연도 학교법인 상산학원 회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중심으로 「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등 관계법규, 그리고 「2019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」의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세입·세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과 실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 절차를 빠짐없이 모두 진행하였으며, 법인회계 총세입결산액이 1,347,655,812원, 총세출결산액이 1,320,030,670원으로 이월금은 27,625,142원이었음.

■ **감사 결과**, 예산과목 해소를 오인하여 교비에서 부담해야할 계약직 법정부담금을 법인수입금으로 충당하여 부적합한 사례가 적출되었음.(2020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정됨)

또한, 법인 수익금중 학교전출금 결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법인수입의 8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원조기부금의 전출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, 법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학교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필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.

■ 더불어,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지성, 덕성, 야성을 구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「상산인의 헌장」과 같은 건학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학원가족 모두의 힘을 더욱 결집해 나아가야 하겠음.

2020년 3월 31일

학교법인 상산학원

감사 엄 상 섭



학교법인 상산학원

감사 최 학 주

